2022. 12. 6.(화) 10:00

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

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도 시 환 경 위 원 회

(수석전문위원 신 성 해)

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30일 유영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1. 제안이유

❍ 상위법인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을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
나. 계획의 명칭 및 내용을 ‘물산업 육성 종합계획’에서 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’으로 수정함(안 제4조)

3. 검토의견

❍ 「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조례 제정(2015. 1. 15.) 이후 관련 법인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)이 제정(2018. 6. 12.)됨에 따라 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

❍ 안 제4조(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와 안 제5조(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)제2항제1호에서 ‘종합계획’을 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’으로 변경한 것은

법 제5조제1항에서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‘기본계획’을 수립하고, 법 제5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‘시행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및 용어사용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

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】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)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

1.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
3.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
4.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
5.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
6.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
7.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
8.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❍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